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(안 제64조제1항, 제68조제1항 및 제129조).
-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,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함(안 제115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